보다 나은 식약처

지침서-0989-01

발 간 등 록 번 호
11-1471000-000418-01

식 · 의약품 등의 잠재이슈 업무지침

(공무원 지침서)

202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식·의약품 등의 잠재이슈 업무지침 (공무원 지침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1 년 1 월 13 일

담당자 이 종 구

확 인(부서장) 주 선 태

이 지침서는 '식·의약품 등의 잠재이슈 발굴 및 조치 업무' 관리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내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1년 1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719
팩스번호: 043-719-1710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 번호	승인 일자	주요 내용
1	지침서-0989-01	2021. 1. 13	식·의약품 등의 잠재이슈 발굴 업무 체계 확립을 위한 지침(공무원 지침서) 제정
2			
3			
4			
5			

목 차

Ⅰ. 식·의약품 등의 잠재이슈 업무 개요 ····· 1

1. 배경 ····· 2
2. 목적 ····· 2
3. 잠재이슈 대상 ····· 2
4. 의의 ····· 2

Ⅱ. 잠재이슈 업무 관리체계 ····· 3

Ⅲ. 세부 업무절차 ····· 5

1.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 6
2. 잠재이슈 선정 ····· 9
3. 자료정리 및 정책적 제언 · 개선사항 ····· 9
4. 조치 현황 모니터링 및 활용 ····· 10

Ⅳ. 정보 출처별 자료수집 및 이슈후보 발굴 ····· 11

1. 언론 · SNS ····· 12
2. 국내 · 외 위해정보 및 CISS ····· 14
3. 식품안전나라 ····· 16
4. 외부 단체동향 ····· 18
5. LIMS ····· 20
6. 기타 ····· 22

Ⅴ. 부록 ····· 24

[붙임 1] 잠재이슈 정보자료 양식 ····· 25
[붙임 2] 잠재이슈 항목별 평가표 양식 ····· 26

Ⅰ. 식·의약품 등의 잠재이슈 업무 개요

1. 배경

○ 코로나19, 기후변화, 소비・유통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협요인 증가로 식・의약품 등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이슈를 감지하고, 사전 위해요인 예측을 위한 과학적 위해정보 감시체계(K-RISS)를 단계적 도입・운영 중에 있다. 본 지침 제정을 통해 위해정보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잠재적 이슈 업무 체계를 정립하여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목적

○ 식·의약품 등의 국내·외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잠재적 이슈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잠재이슈 대상

○ 잠재이슈 대상 범위는 아래 내용에 한정한다.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이하 “식·의약품 등”이라 함)과 관련하여 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인 이슈로 새롭게 부각되거나 또는 반복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품 및 제도

4. 의의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 수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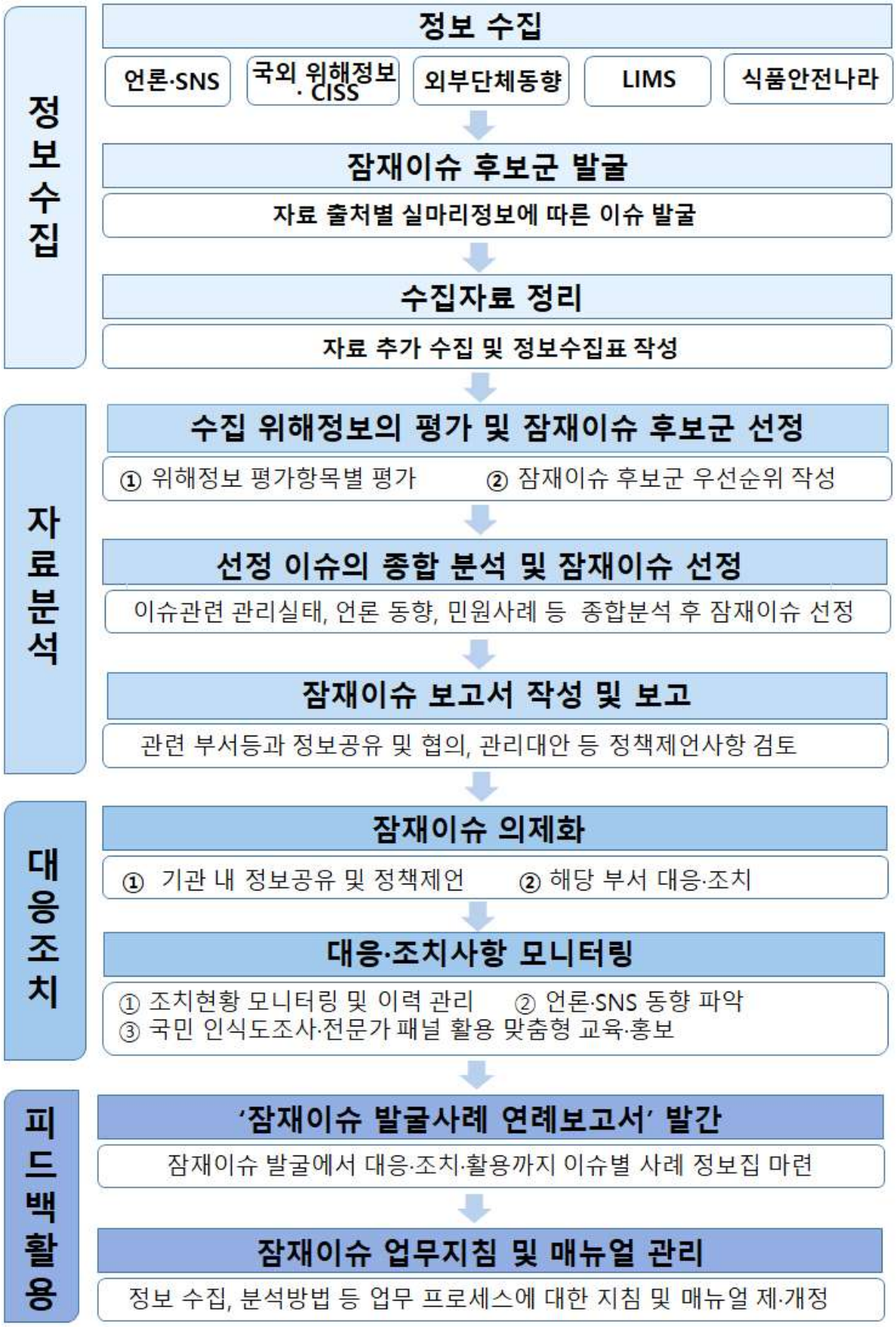
○ 사회적 관심과 그 변화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 가능

○ 정보간의 연계성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파악 가능

○ 이슈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인의 조기 발견 가능

○ 정책수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추진의 불완전성을 사전에 예방

Ⅱ. 잠재이슈 업무 관리체계


정보수집
정보 수집
언론·SNS
국외 위해정보 · CISS
외부단체동향
LIMS
식품안전나라
잠재이슈 후보군 발굴
자료 출처별 실마리정보에 따른 이슈 발굴
수집자료 정리
자료 추가 수집 및 정보수집표 작성
자료분석
수집 위해정보의 평가 및 잠재이슈 후보군 선정
① 위해정보 평가항목별 평가 ② 잠재이슈 후보군 우선순위 작성
선정 이슈의 종합 분석 및 잠재이슈 선정
이슈관련 관리실태, 언론 동향, 민원사례 등 종합분석 후 잠재이슈 선정
잠재이슈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련 부서등과 정보공유 및 협의, 관리대안 등 정책제언사항 검토
대응조치
잠재이슈 의제화
① 기관 내 정보공유 및 정책제언 ② 해당 부서 대응·조치
대응·조치사항 모니터링
① 조치현황 모니터링 및 이력 관리 ② 언론·SNS 동향 파악
③ 국민 인식도조사·전문가 패널 활용 맞춤형 교육·홍보
피드백활용
'잠재이슈 발굴사례 연례보고서' 발간
잠재이슈 발굴에서 대응·조치·활용까지 이슈별 사례 정보집 마련
잠재이슈 업무지침 및 매뉴얼 관리
정보 수집, 분석방법 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제·개정

〈잠재이슈 업무 프로세스〉

Ⅲ. 세부 업무절차

1.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1-1. 잠재이슈 정보 수집원칙

1) 식약처 소관제품 여부 또는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비관리제품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2)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 정도 또는 이슈로 부각될 경우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적 영향 정도 즉, 심각성, 시급성, 파급정도, 생활밀접성, 공포감,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인체유해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필요시 국내·외 기준·규격 등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한다.

4) 식·의약품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 담당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잠재이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5) 단, 잠재이슈의 특성상 매주 수집·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 출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시 또는 주기를 변경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1-2. 정보수집 출처

1) (국내) 언론·SNS('혜안',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식품안전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국민신문고, 외부단체동향,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 (국외) 미국 FDA 등 위해정보 355개 사이트

* 식품 29개국 189개, 의료제품 23개국 166개

1-3. 정보수집 출처별 담당부서

출처별 수집정보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표 1〉 수집정보별 담당부서

연번	수집정보	담당부서
1	언론·SNS	위해예방정책과
2	식품안전나라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3	국내·외 위해정보 및 CISS	위해정보과
4	외부단체동향	소통협력TF팀
5	민원사례	고객지원담당관(위해예방정책과 요청)
6	LIMS	시험검사정책과

1-4. 정보분석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수집정보별 분석내용

(1) 언론·SNS

- 일자별 수집정보와 긍·부정 평판을 분석한다.

(2) 국내·외 위해정보 및 CISS

- 국내·외에서 이슈가 된 정보 또는 피해신고 내용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슈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분석한다.

(3) 식품안전나라

- 검색순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새롭게 등장한 검색어 또는 증가폭이 큰 검색어의 원인을 파악한다.

(4) 외부단체동향

- 소비자단체 등 외부 단체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잠재이슈의 실마리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5) LIMS

- 식·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징후가 있는 검사항목을 발굴·분석한다.

(6) 국민신문고(민원사례)

- 잠재이슈 주제에 대한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 불만, 개선점 등을 조사한다.

※ 위해예방정책과는 잠재이슈 업무와 관련하여 식약처내 민원사례 정보를 고객지원담당관을 통해 수집가능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언론·SNS

- 수집 건수가 많은 주제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긍·부정 평판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다.

(2) 국내·외 위해정보 및 CISS

- 시급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유발될 수 있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실마리정보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다.

(3) 식품안전나라

- 높은 검색순위에 해당되거나 증가폭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 및 원인을 파악하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다.

(4) 외부단체동향

- 소비자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등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5) LIMS

- 주기적으로 시험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일정기간내 검사건수의 증가폭이 높거나 부적합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6) 국민신문고

- 각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도출한 잠재이슈 후보에 대해 고객지원담당관에 민원분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기반자료로 활용한다.

2. 잠재이슈 선정

○ 각 담당부서별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도출된 잠재이슈 후보군을 대상으로 '잠재이슈 정보자료'(붙임 1)를 작성한 다음 '잠재이슈 항목별 평가표'(붙임 2)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도록 한다.

* 단, 각 담당부서별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에서 이슈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도출될 경우 모두를 후보에 포함시킨다.

○ 우선순위별 잠재이슈 후보를 사회적·정책적 이슈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평가 후 최종 잠재이슈로 선정한다.

3. 자료정리 및 정책적 제언 · 개선사항

○ 선정된 잠재이슈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관련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정리 및 필요시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적 제언 및 개선사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

- 주요 정보수집 내용

① 이슈관련 법령, 제도 비교·분석

② '혜안',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분석

③ 유통현황 등 실태파악

④ 이슈관련 민원사례 분석

⑤ 부서간·부처간 논의 필요사항

○ 데이터분석(언론·SNS 등 여론동향, 민원사례 등), 시장상황·유통현황 등 실태, 국내·외 제도·관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상기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 협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정책적 제언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4. 조치 현황 모니터링 및 활용

○ 주기적으로 해당부서를 통해 잠재이슈의 정책적 제언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치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며,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조치일자, 특이사항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한다.

-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잠재이슈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식·의약품 등의 위해예방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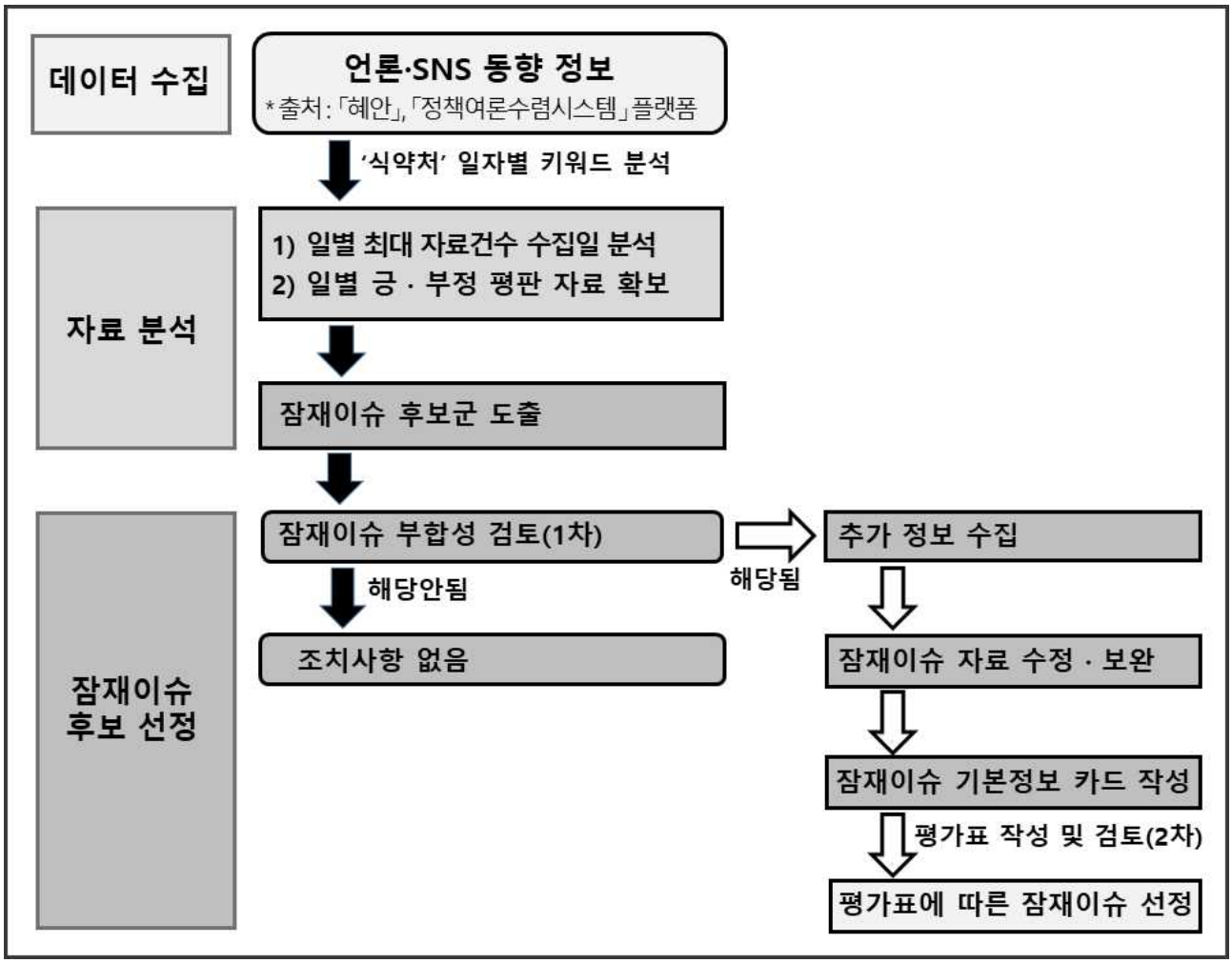
- 또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확대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잠재이슈의 발굴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전주기적 정보를 건별로 요약·정리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공유 하도록 한다.

Ⅳ. 정보 출처별 자료수집 및 이슈후보 발굴

1. 언론 · SNS

가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모식도



나 주요 내용

1. 정보수집 출처

1) 혜안(http://insight.go.kr)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수집·저장·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활용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행정망에서 이용가능

2) 정책여론수렴시스템(http://big.pr.go.kr)

- 문체부의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 홍보,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론 분석 업무를 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외부망에서 이용가능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일별 소셜동향 분석

(1) (수집 건 수) 수집 건 수가 높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 키워드분석 후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2) (긍·부정 평판) 부정 평판이 높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 키워드 분석 후 원인을 파악한다.

* 상기 분석 플랫폼에서 수집된 정보(수집 건 수, 긍·부정 평판)를 엑셀을 이용하여 일자별 취합·정리 및 그래프로 도식화

2) 주간 주요 키워드 분석

- 기타 주요 이슈 확인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간 주요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 시 긍·부정 평판도 병행하도록 한다.

* 건 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추후 식약처의 잠재이슈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비관리제품) 등도 고려 필요

3) 주요 이슈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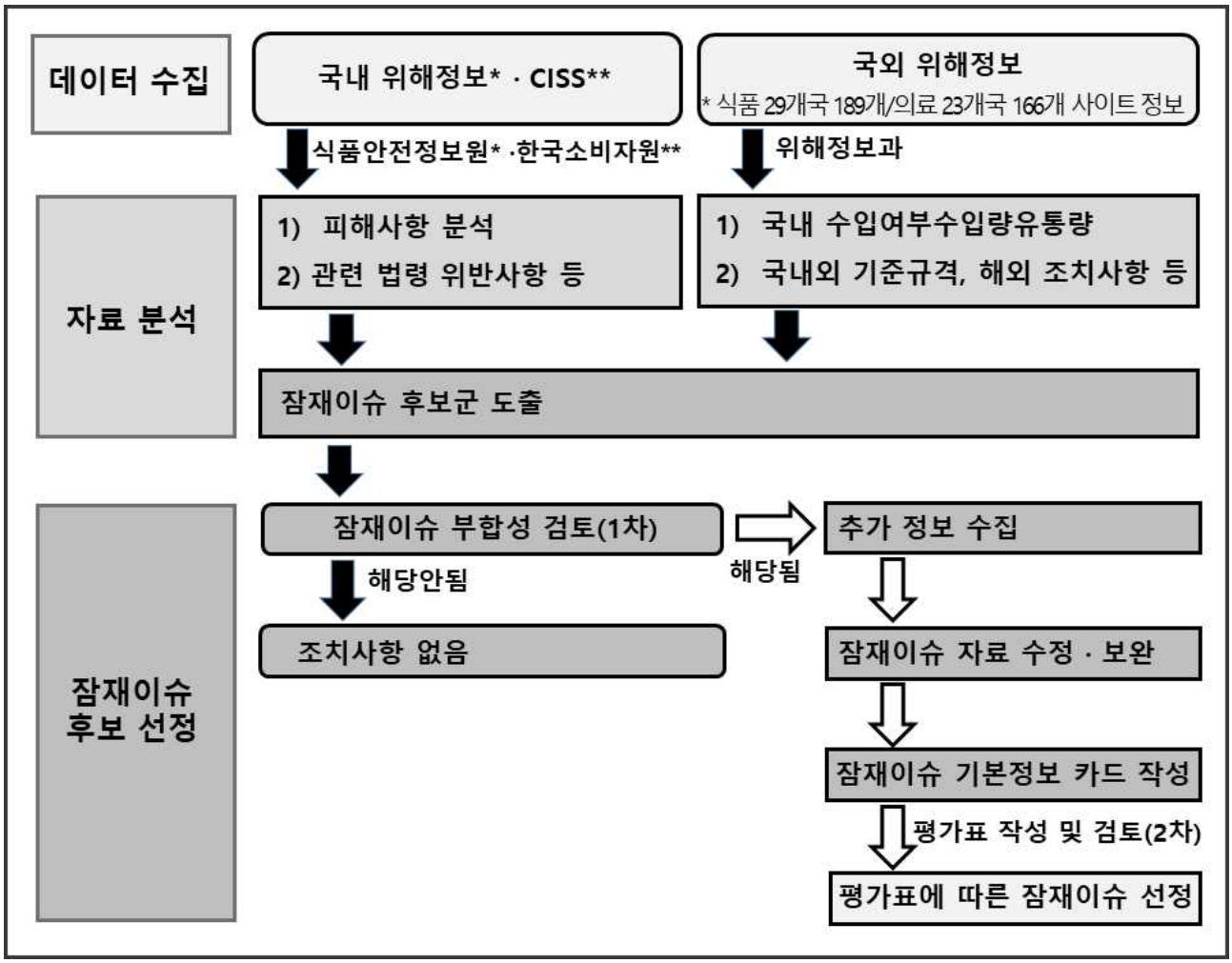
(1) 1)과 2)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많이 수집된 정보내용을 주요이슈 주제로 선정하고, 수집정보의 양은 적으나 실마리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도 선정하여 원인을 함께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잠재이슈와 연관된 기사댓글, SNS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2)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굴된 잠재이슈 후보의 심각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종 잠재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2. 국내 · 외 위해정보 및 CISS

가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모식도



나 주요 내용

1. 정보수집 출처

1) 국내 : CISS, 식품안전정보원

2) 국외

(1) 식품 분야 :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등 29개국 189개 사이트

* 검색어 : 안전, 위생, 회수 등 40개

(2) 의료 분야 : 유럽 의약품청(EMA) 등 23개국 166개 사이트

* 검색어 : 허가취소, 판매금지, 경고 등 35개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정보 신뢰성) 분야별 정보의 내용, 정확성, 출처, 관련규정 등을 확인한다.

2) (위험요인) 유해물질, 제품결함, 이물혼입, 부정 광고표시, 부작용, 이상사례, 식중독, 불법제품(무허가), 회수제품의 재유통 등을 검토한다.

3) (상황 및 피해의 심각성)

(1) 주요 위험요인의 피해 심각성, 확산 가능성, 언론 이슈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 예시 : 사망, 발암, 식중독 등 감염성 질병 등

(2) 유해물질 위해성 정도를 확인한다.

* 예시 : 국제암연구소(IARC) 등급분류 참조

(3) 취약계층(영유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여부를 확인한다.

4) (소비자의 노출 가능성·노출 정도)

(1) 개별 품목·성분에 국한되는지 또는 관련 분야 전체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해외직구 온라인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국내 관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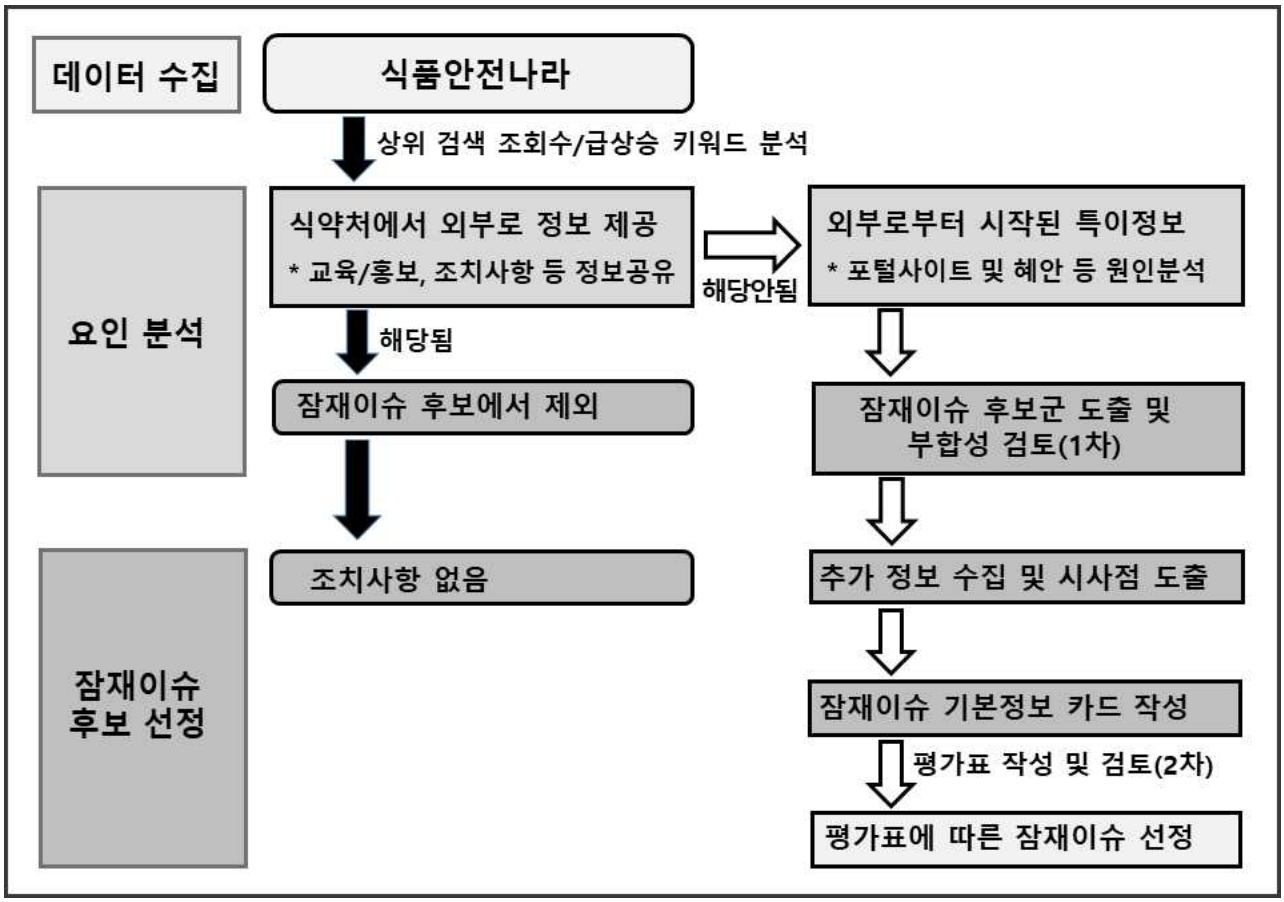
(1) 관련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2) 국내 기준·규격, 시험법, 허가 등 관리방법 유무 등을 확인한다.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굴된 잠재이슈 후보의 심각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종 잠재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3. 식품안전나라

가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모식도



나 주요 내용

1. 정보수집 출처

1)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원)

2) 네이버 데이터랩, 혜안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검색순위 분석) 식품안전나라의 검색 조회수 상위 키워드 또는 급상승 키워드를 확인하고, 주요 검색주제에 대해 내·외부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1) (내부) 식약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검사 동향 등 위해관리 조치 및 위해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2) (외부) 포털사이트 기반 뉴스·SNS 동향분석 및 혜안, 데이터랩의 특이사항 등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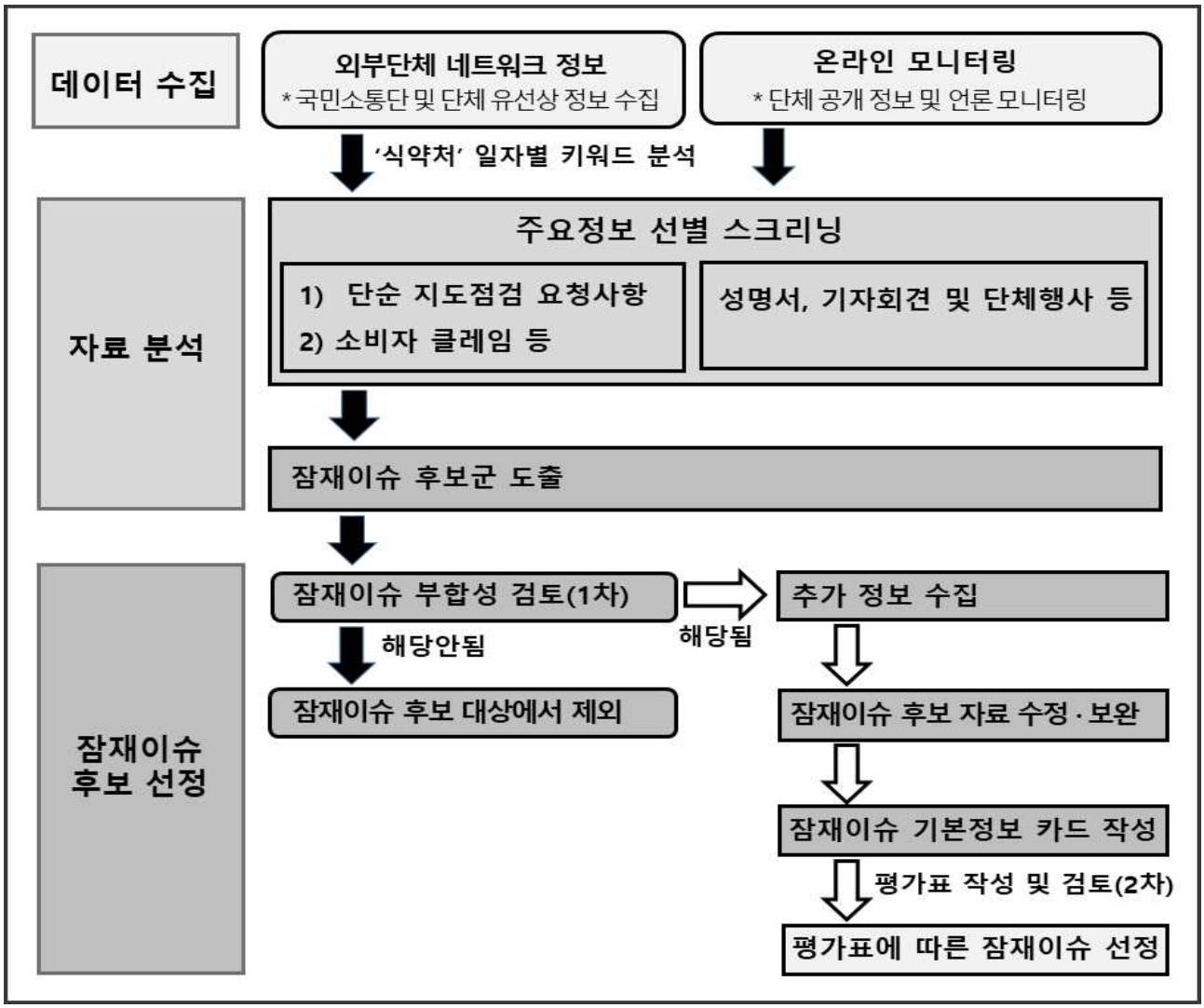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시사점 분석 실시로 잠재이슈 후보의 심각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잠재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1) 식약처에서 외부로 제공한 정보에 의해 기인된 관심도 증가는 주로 위해예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2) 외부에서 제기한 정보에 의해 기인된 관심도 증가는 정확한 실태·심각성·시급성 파악 및 무분별한 정보에 의한 오인·혼란 방지 대책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국민과의 소통, 유관기관간 협력사항 등을 검토한다.

4. 외부 단체동향

가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모식도



나 주요 내용

1. 정보수집 출처

1) 국민소통단 등 대면협의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경실련,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환경·보건분야 단체(30개), 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81개) 홈페이지 정보 및 유관단체 문의사항(제보, 상담사례 등)

2) 언론 모니터링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법령, 제도 등 소비자 개선 요청사항과 불만사항 등에 대해서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수집된 정보를 확인한다.

(1) 새롭게 확인된 사실정보

(2) 매체 노출이 많은 제품

(3) 장기 미해결 과제

(4) 성명서 등 보도자료 배포 예정

(5) 불안감 또는 위해우려가 상당한 경우

2) 성명서, 보도자료, 기자회견, 단체행사, 언론기사 및 인터뷰 내용을 아래 항목에 대해 확인한다.

(1) 보도자료, 행사 등 발표 형식

(2) 타 단체 연대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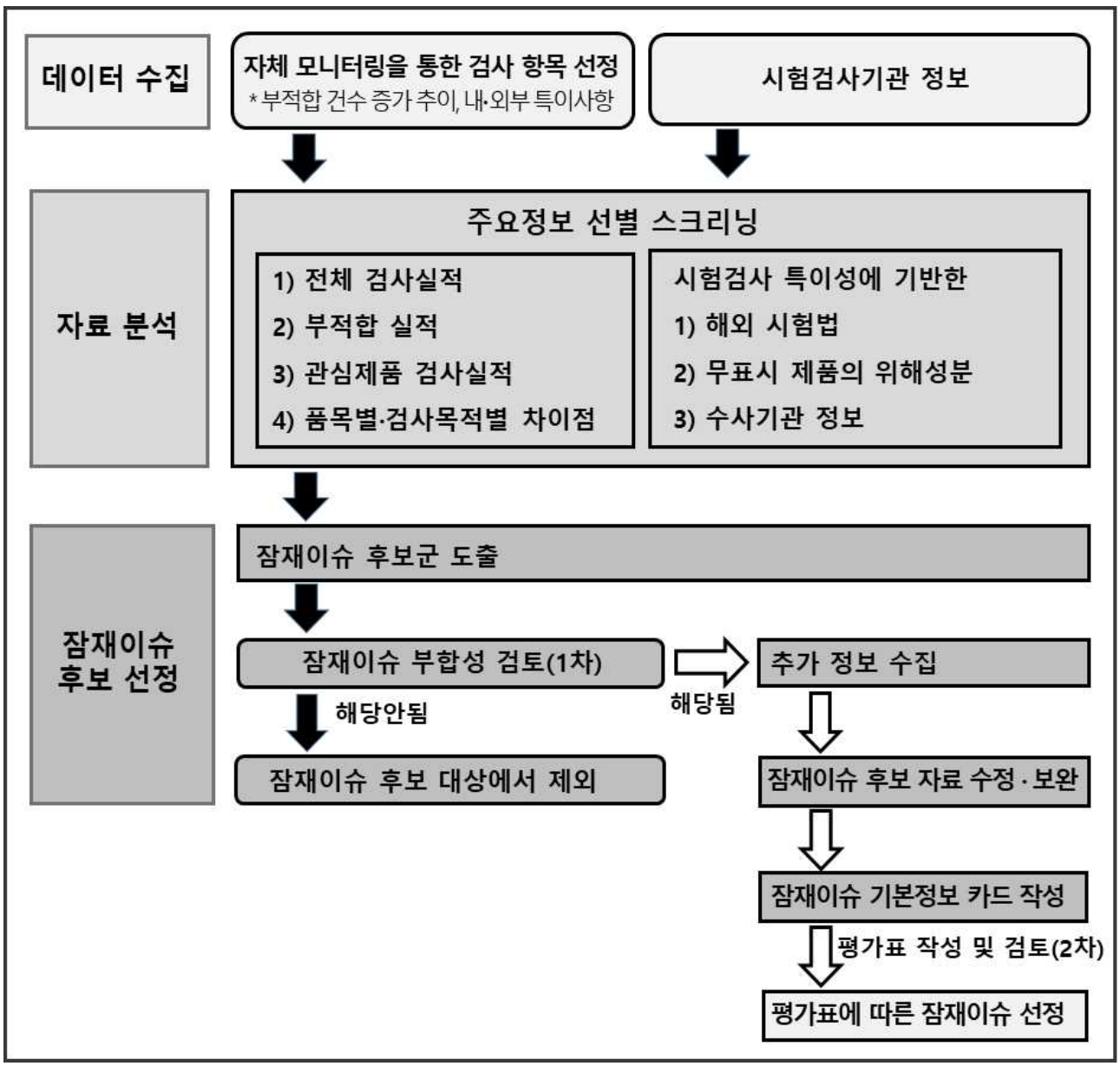
(3) 방송, 일간지 등 언론노출정도

(4) 식약처 소관사항 여부 등 대응 주체

3)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굴된 잠재이슈 후보의 심각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종 잠재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5. LIMS

가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모식도



나 주요 내용

1. 정보수집 출처

- LIMS, 시험검사기관 정보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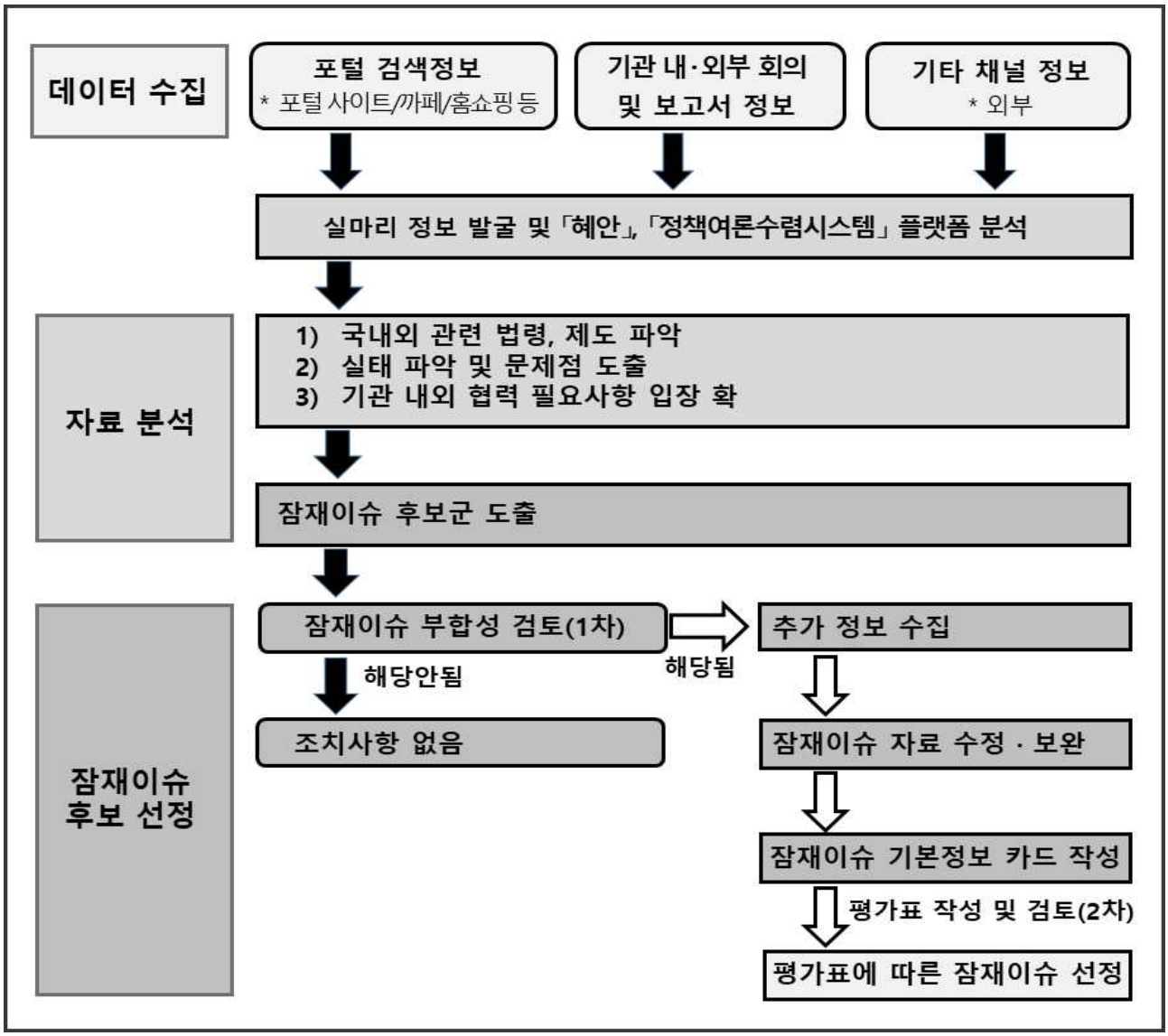
1) LIMS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특정 목적 또는 증감율이 높은 분석 항목 대상으로 시험결과 자료를 비교·분석한다.

2) 국내 규정이 아닌 해외 시험법을 따르거나 무표시 제품에서 위해 성분 발견 등 법적 검사 외 특이사항 발생시 시험검사기관에서 별도 정보 공유한다.

3)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굴된 잠재이슈 후보의 심각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종 잠재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6. 기타

가 정보수집 및 잠재이슈 후보 발굴 모식도



나 주요 내용

1. 정보수집 출처

1) 포털사이트 기사·댓글, 카페, 온라인쇼핑몰 등 각종 정보

2) 식약처 내·외 회의 및 보고서

3) 기타 수집 정보

2. 잠재이슈 후보 발굴

1) 수집자료에서 실마리정보를 발굴하여 잠재이슈의 적절성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2) 해당 주제에 대해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수집·분석한다.

(1) (대국민관심도) 온라인 등 분석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의 인식도와 긍·부정 평판을 분석한다.

(2) (대응·조치 현황) 해당주제에 대해 사업국의 인지여부, 대응상황 등을 파악한다.

(3) (실태파악) 관련 법령, 제도 분석 및 유관기관간 협력사항 필요여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4) (문제점 해결방안)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정책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5) (향후 예측) 해당주제가 이슈로 부각될 시 대내·외 영향정도를 검토한다.

3)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굴된 잠재이슈 후보의 심각성,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종 잠재이슈 후보로 선정한다.

Ⅴ. 부 록

[붙임 1] 잠재이슈 정보자료 양식

연번	기본 정보								
1	잠재이슈명								
2	정보수집일	20 . . .							
3	이슈 종류	① 제품(물질) ② 제도 ③ 기타 ( )							
4	이슈 분야	① 식품 ② 의약품 ③ 의료기기 ④ 화장품 ⑤ 의약외품 ⑥ 위생용품 ⑦ 해당분야 없음							
5	정보수집출처	① 언론/SNS ② 국외 위해정보 ③ CISS ④ 외부단체동향 ⑤ LIMS 시스템 ⑥ 식품안전나라 ⑦ 민원정보 ⑧ 각종회의정보 ⑨ 기타 (*담당자 발굴*)							
6	정보수집방법	①	DB 모니터링	②	내·외부 수집자료	③	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④	내·외부 제언요청
7	수집자료형태	① 보고서/외부공개자료 ② 기사/댓글 ③ DB ④ 각종회의자료 ⑤ 기타 ( )							
8	이슈 가능성	상		중		하			
9	이슈 시급성	① 높음 ② 보통 ③ 낮음							
9	관련이해기관	기관내부 *관련부서명*		외부기관 *관련기관명*		비관리제품			
10	국민적 관심도	① 높음 ② 보통 ③ 낮음							
상세 정보									
연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	배경								
12	주요 동향	국내	- 분석플랫폼 분석결과 ** 우선순위 결과 또는 이슈사항*						
			- 식약처 : *그 간 조치사항 등* - 외부단체 : *성명서 등 입장표명 내용* - 언론/보도자료 : *이슈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 등* - 기타 :						
			시험검사결과(통계) - 주요항목 : - 분석결과 :						
13		국외	- *FDA, , EMA, EFSA, PMDA 등*						
14	규정·기준	국내							
15		국외							
16	문제점								
17	개선내용								
	정책제언성격		① 모니터링 강화 ② 제도운영 개선 ③ 관련법규 제·개정 ④ 점검 등 처벌조치 ⑤ 부처간 협의 ⑥ 교육·홍보 ⑦ 기타 ( )						

* 연번 3~10번 : 선택사항만 체크

* "이슈 가능성/시급성/국민적 관심도"는 최초 정보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체크

[붙임 2] 잠재이슈 항목별 평가표 양식

연번	잠재이슈명	1차(항목별 평가)										2차(이슈 후보 검토)						총점수 (①~⑭)
		외부 항목						감정촉발 요인			누적점수	정보확인 후 일괄 부여					누적점수	
		① 심각성	② 시급성	③ 파급력	④ 빈도수	⑤ 지속성	⑥ 생활밀접성	⑦ 영유아영향	⑧ 공포감	⑨ 생명과의직결성	(①~⑨)	⑩ 단체 등 입장 표명	⑪ 해당 부서 조치 여부	⑫ 관리 대상 여부	⑬ 해외 기준과 부합성	⑭ 기존 이슈 유무	⑩~⑭ 점수	
1																		
2																		
3																		
4																		
5																		

①~⑥ : 높은 수준일 경우 3점 ~ 낮은 수준일 경우 0점(0, 1, 2, 3점 중 택일)

* '빈도수'는 발굴된 이슈 관련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얼마나 자주 공론화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채점

'지속성'은 발굴된 이슈가 이슈화 될 경우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채점

⑦ : 소비자단체, 국회 등 외부에서 지적하여 이슈화가 가중될 가능성 높을 경우 3점, 외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2점, 외부에서 문제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점, 외부에서 지적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0점

⑧ : 해당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3점, 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점, 해당부서에서 인지하여 검토 중인 경우 1점,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완료한 경우 0점

⑨ : 우리처 소관제품일 경우 3점,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2점,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물질)인 경우 1점, 우리처 소관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0점

⑩ : 국외기준은 있으나 국내는 없는 경우 3점, 국외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2점, 국외기준과 동일한 경우 1점, 국외기준이 없거나 우리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0점 (국내·외 기준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공란으로 표기)